

한양 100년의 꿈

HANYANG UNIVERSITY



2014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인터넷 원서접수 : 2013. 7. 2[화] ~ 7. 5[금]

■ 필답고사 전형일 : 2013. 7. 20[토]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목 차

1. 전형일정	1
2. 모집방법 및 모집단위/인원	2
3.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6
4. 전형방법	11
5. 참고사항	12
6. 제출서류	14
7.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법 안내	17
8. 수험생 유의사항	19
9. 인터넷 등록포기 신청안내	20
10. 2015학년도 변경사항 예고	21
11.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양식)	23
12. 제3국 수학 사유서(양식)	24
13. 교통편 안내 및 약도	25

전 형 일 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3. 7. 2(화) 9:00 ~ 7. 5(금) 17:00까지	http://go.hanyang.ac.kr 또는 http://www.uwayapply.com	
수험생 유의사항 및 고사장 공고	2013. 7. 16(화) 14:00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go.hanyang.ac.kr	
필답(면접)고사	2013. 7. 20(토)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고사장 : 본교 서울캠퍼스)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준비
1단계 합격자 발표 (3배수 내외)	2013. 7. 26(금) 14:00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go.hanyang.ac.kr 지원자동합서비스	계열석차순 선발 (국제학부는 학부석차순 선발)
1단계 합격자 서류제출	2013. 7. 29(월) 9:00 ~ 8. 2(금) 17:00까지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신본관 1층 입학처(우:133-791)	[등기우편발송] 2013. 8. 2(금) 국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합격자 발표	2013. 9. 27(금) 14:00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go.hanyang.ac.kr 지원자동합서비스	「합격통지서」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등록예치금 납부	2013. 12. 9(월) ~ 12. 11(수)	본교 지정은행 전국 각 지점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추가합격자 발표	2013. 12. 11(수) 21:00 ~ 12. 16(월) 21:00	개별 전화통보 및 입학처 홈페이지 http://go.hanyang.ac.kr 지원자동합서비스	「합격통지서」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잔액 납부	2014. 2. 6(목) ~ 2. 10(월)	본교 지정은행 전국 각 지점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합격자 및 미등록자 제출서류 반환	2014. 2. 28(금) 이전	인터넷 원서 작성 시 기재한 서류반환 국내주소로 등기우편발송	

※ [초중등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국제협력처 홈페이지(<http://www.dic.hanyang.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2-2220-0045~7)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원본서류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 ① 원본과 사본 모두를 지참하여 입학처에 방문 후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캠퍼스 신본관 1층 입학처)
- ② 국내 정규고교 또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고교장의 직인으로 확인된 원본대조필 서류도 제출가능 합니다.
- ③ 위의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입학 전까지 원본을 입학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방법 및 모집단위/인원

□ 모집방법

1. 지원자는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동시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학부(과)는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2. 전체 모집인원은 당해 연도 신입학 총 입학정원의 2% 이내입니다.
3. 1단계 합격자는 계열별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에서 선발합니다. (단, 국제학부는 학부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
4. 최종합격자는 1단계 합격자 중 지원자격 미충족자를 제외하고 필답(면접)고사 성적의 계열석차순으로 선발합니다.
5. 국제학부 최종합격자는 인문계열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하되 계열석차순에 상관없이 학부석차순으로 4명을 선발합니다.
6. 해당학부(과)의 ‘최대모집 가능인원’을 초과한 인원은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7. 서울캠퍼스의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소프트웨어전공,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응용시스템학과, 의예과, 사범대학 전 학과와 ERICA캠퍼스의 융합공학과, 약학과,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 그리고 양 캠퍼스 예체능계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8.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교 국제협력처에서 진행하는 ‘초중등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과 같이, 9월 초 원서접수 기간에 지원하여 논술고사 및 한국어시험에 응시합니다.
9.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본 대학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10. 본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학력수준에 미달된 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신입생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계열별 모집인원

캠퍼스	계 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서 울	인문계열	전 학부/과(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제외)	30
		국제 학부	4
	자연계열	전 학부/과(소프트웨어전공,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응용시스템학과, 의예과 제외)	24
	캠퍼스 소계		58
ERICA	인문계열	전 학부/과(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 제외)	23
	자연계열	전 학부/과(융합공학과, 약학과 제외)	15
	캠퍼스 소계		38
전체 합계			96

※ 위의 계열별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최대모집 가능인원

○ 서울캠퍼스

대 학	학 부(과)	세 부 전 공	입학 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 구분
공 과 대 학	건 축 학 부 (5년제)		48	4	자연
	건 축 공 학 부		48	4	
	건 설 환 경 공 학 과		53	5	
	도 시 공 학 과		43	4	
	자 원 환 경 공 학 과		32	3	
	응 합 전 자 공 학 부		120	12	
	컴 퓨 터 공 학 부	컴퓨터전공	85	8	
	정 보 시 스 템 학 과		40	4	인문
	전 기 · 생 체 공 학 부	전기공학, 생체공학	83	8	자연
	신 소 재 공 학 부		105	10	
	화 공 생 명 공 학 부	화학공학, 생명공학	90	9	
	유 기 나 노 공 학 과		34	3	
	기 계 공 학 부		150	15	
	원 자 력 공 학 과		40	4	
	산 업 공 학 과		44	4	
인 문 과 학 대 학	국 어 국 문 학 과		32	3	인문
	중 어 중 문 학 과		47	4	
	영 어 영 문 학 과		58	5	
	독 어 독 문 학 과		20	2	
	사 학 과		25	2	
	철 학 과		20	2	

대 학	학 부(과)	세 부 전 공	입학 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 구분
사 회 과 학 대 학	정 치 외 교 학 과		36	3	인문
	사 회 학 과		32	3	
	미 디 어 커 뮤 니 케 이 셴 학 과		45	4	
	관 광 학 부		37	3	
자 연 과 학 대 학	수 학 과		50	5	자연
	물 리 학 과		45	4	
	화 학 과		55	5	
	생 명 과 학 과		50	5	
경 제 금 융 대 학	경 제 금 융 학 부		115	11	인문
경 영 대 학	경 영 학 부		240	24	
생 활 과 학 대 학	의 류 학 과 (자연)		12	1	자연
	식 품 영 양 학 과 (자연)		24	2	
	실 내 건 축 디 자 인 학 과 (자연)		12	1	
	의 류 학 과 (인문)		24	2	인문
	식 품 영 양 학 과 (인문)		12	1	
	실 내 건 축 디 자 인 학 과 (인문)		23	2	
예 술·체 육대 학	스 포 츠 산 업 학 과		30	3	인문
	연 극 영 화 학 과		49	4	
간 호 학 부	간 호 학 전 공 (자연)		27	3	자연
	간 호 학 전 공 (인문)		11	3	인문
국 제 학 부	국 제 학 부		50	4	

○ ERICA캠퍼스

대 학	학 부(과)	세 부 전 공	입학 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 구분
공 학 대 학	건 축 학 부	건축학(5년제), 건축공학(4년제)	72	7	자연
	건 설 환 경 플 란 트 공 학 과		43	4	
	교 통 물 류 공 학 과		38	3	
	전 자 통 신 공 학 과		77	7	
	전 자 시 스템 공 학 과		71	7	
	컴 퓨 터 공 학 과		71	7	
	재 료 공 학 과		43	4	
	화 학 공 학 과		43	4	
	기 계 공 학 과		93	9	
	산 업 경 영 공 학 과		38	3	
	생 명 나 노 공 학 과		30	3	
	로 봇 공 학 과		30	3	
과 학 기 술 대 학	응 용 수 학 과		35	3	자연
	응 용 물 리 학 과		38	3	
	응 용 화 학 과		43	4	
	해 양 융 합 과 학 과		31	3	
	분 자 생 명 과 학 과		47	4	

대 학	학 부(과)	세 부 전 공	입학 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 구분
국 제 문 화 대 학	한 국 언 어 문 학 과		38	3	인문
	문 화 인 류 학 과		38	3	
	문 화 콘 텐 츠 학 과		40	4	
	중 국 학 과		48	4	
	일 본 언 어·문 화 학 과		45	4	
	영 미 언 어·문 화 학 과		75	7	
	프 랑 스 언 어·문 화 학 과		34	3	
언 론 정 보 대 학	광 고 홍 보 학 부	광고, 홍보	69	6	
	신 문 방 송 학 과		39	3	
	정 보 사 회 학 과		29	2	
경 상 대 학	경 제 학 부		88	8	
	경 영 학 부		136	13	

※ 대학, 학부(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전공이 있는 학부 입학생의 전공은 2학년 진급 시 결정되며 전공별 인원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생은 일체의 입학 특전이 없습니다. 단, 한양형제자매장학금, 보훈장학금, 사랑의실천장학금은 해당 자격자에 한해 장학복지팀(☎ 서울 02-2220-0095, ERICA 031-400-4309)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지원자격

○ 자격구분 및 요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자로 부모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생의 특례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해외재학기간 동안 부모가 동반 근무, 거주(영주)해야 합니다.

자격 구분	세부 구분	자격 요건(최소 해외재학기간)
교포자녀	영주권 취득 해외거주자	①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에는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통산 4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근무 해외지사 주재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외국 근무자 자녀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본인 외국인	시민권 취득 후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2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통산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부모의 자격에 무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2011. 1. 1.부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습니다.

○ 자격요건 충족 사례(연속 3개 학년 수료 기준)

예1)

구 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보호자 해외 근무·거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예2)

구 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보호자 해외 근무·거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 심사기준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인정범위

1. 소속기관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외국근무자에 대해서만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2.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해외체류는 외국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지원자격 인정범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근무 해외지사주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인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지점, 사무소)의 임직원 ■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특례요건 최소 해외재학·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

1. 학생의 재학(거주)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해외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방학기간과 학교휴업기간(3개월 이내)을 해외재학(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이 기간 중의 국내체류는 해외체류로 간주합니다.
3. 보호자(부모)는 역년(Calendar Year)으로 해외근무·거주(영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호자(부모)는 학생의 해외 고교과정 중 최소한 6개월(180일) 이상을 포함하여, 학생이 해외 중·고교과정 연속 3개 학년 또는 비연속 4개 학년 이상을 수료할 때까지 동반 해외근무·거주(영주)해야 합니다.
5. 보호자(부모)가 해외근무·거주(영주)기간 중에 연속 3개월(90일) 이상을 국내체류하였거나, 학생의 해외재학 학기 중 해당학기의 2/3 이상을 국내체류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원서의 특이사항란에 그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심사위원회의 내규에 준합니다.

자격 구분	세부 구분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형태	특례요건 최소 해외재학 · 근무 · 거주 · 체류기간							
			학생			보호자			보호자의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교포자녀	고교입학 전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한국인의 자녀 (주민등록 말소자)	①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연속 수료 ②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4개 학년 이상 비연속 수료					(영주) ① 3년 · ② 4년	① 1년 6개월 · ② 2년	(영주) ① 3년 · ② 4년	① 1년 6개월 · ② 2년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공무원 자녀 *해외지사 주재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근무자 자녀		① 3년 · ② 4년	① 3년 · ② 4년	① 3년 · ② 4년	① 3년 · ② 4년	① 3년 · ② 4년	① 1년 6개월 · ② 2년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해외 자영업자 자녀 *해외 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해외 선교활동자 자녀 *해외 학·석·박사과정 유학자 자녀					① 3년 · ② 4년	① 3년 · ② 4년	① 1년 6개월 · ② 2년	① 3년 · ② 4년	① 1년 6개월 · ② 2년
외국인	본인 외국인 (부모의 자격에 무관)	고교입학 전 외국 국적 취득 후 고교과정 2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3년	3년	3년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통일부 확인							

○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기준

- 12년 학제인 외국학제는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외국의 1~6학년 과정	Grade 1 ~ Grade 6	국내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Grade 7 ~ Grade 9	국내 중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Grade 10 ~ Grade 12	국내 고등학교 과정

단, 13년 학제인 외국학제는 학생이 학교 간에 신 · 편입학하면서 학제차이에 의해 발생한 월반이 1개 학기(semester) 이하인 경우에만 위의 12년 학제와 동일한 학년으로 인정.

2.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고등학교과정 졸업자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3. 13년 학제인 해외 고교에서 1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중 중복수료

학기를 제외한 국내외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11년 6개월) 이상이면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12년 학제인 해외 고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중 중복수료 학기를 제외한 국내외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11년 6개월) 이상이면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12년 미만 학제인 해외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해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1. 해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보호자의 해외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생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합니다.
3. 해외학교 재학 중에 보호자의 타국가 인사발령(대한민국 제외)으로 인한 제3국 수학은 최대 6개월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4.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재학기간 심사기준

1. 해외학교 학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고,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정 외에 소정의 정규과목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유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해외학교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을 재학(방학기간 포함)하면 1개 학년을 재학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국내고교 입학 후에 해외학교로 신·편입학하여 해외고교 졸업 시까지 특례요건 최소 해외재학기간인 연속 3개 학년을 충족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어도 국내고교에서 1학년 1학기까지만 수료하고 그해 8월 31일까지 해외로 출국해야 합니다.
4.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신입학 또는 1학년의 3월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 고교과정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국내학교에서 해외학교로 신·편입학하거나, 해외에 있는 학교 간에 신·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에 의해 발생한 중복 학기는 최대 1개 학기(6개월)만 해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6. 국내학교에서 해외학교로 신·편입학하거나, 해외에 있는 학교 간에 신·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에 의해 발생한 월반 학기는 최대 1개 학기(6개월)만 인정합니다.
7. 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재학기간 산출을 졸업예정일까지로 하며, 2014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단, 해당국가의 학제에 의해 고교졸업이 늦은 경우에는

2014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합니다.

8.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용어 정의

1. 해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해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2.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3. 해외거주기간 : 해외재학·근무 또는 가족동반거주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재외국민등록부상 최초입국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해당 목적이 종료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한 일자까지의 기간
4. 해외체류기간 : 해외근무기간과 해외거주(영주)기간 중 짧은 기간에서 출입국증명서상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일수

○ 해외근무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보호자(부모)가 해외근무·거주(영주)기간 중에 연속 3개월(90일) 이상을 국내체류하였거나, 학생의 해외재학 학기 중 해당학기의 2/3 이상을 국내체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속 국내체류일수 및 학기 중 국내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교 심사위원회에서 특례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전 형 방 법

□ 고사과목 및 반영비율

○ 재외국민과 외국인

계 열		고 사 과 목	반영비율 및 배점	합 계
인문계열	전 학부(과)	국 어	50% (100점)	100% (200점)
		영 어	50% (100점)	
	국제학부	영 어	50% (100점)	
		영어구술면접	50% (100점)	
자연계열	전 학부(과)	수 학	50% (100점)	
		영 어	50% (100점)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지원 계열과 상관없이 영어 100%로 선발합니다.

□ 선발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 필답(면접)고사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단, 필답(면접)고사 성적이 본 대학이 정한 최소한의 수학능력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단계 합격자는 계열별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에서 선발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3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계열별 모집인원을 선발하되, 학부(과)의 ‘최대모집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 필답(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 ① 국어(수학) ② 영어 성적순
단, 국제학부는 ① 영어 ② 영어구술면접 성적순
 -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긴 자

□ 고사시간표

구분 교시	고 사 시 간	고 사 과 목		
		인문계열		자연계열
		전 학부(과)	국제학부	
1	14:00 ~ 15:00 (60분)	영 어	영 어	영 어
2	15:30 ~ 16:30 (60분)	국 어	영어구술면접 1인(조)당 7분 내외	수 학

※ 고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2013. 7. 16(화) 14:00) 예정입니다.

※ 수험생은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참 고 사 항

○ 지원 유효기간

2012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2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지원횟수 제한

본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은 수시전형 지원횟수 6회 제한에 해당하는 전형입니다.

○ 지원 제한

학생과 부모가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 영주, 유학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형료

구 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재외국민과 외국인	150,000원	50,000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50,000원	—

○ 전형료 환불

1.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취소를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구 분	환 불 금 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4일 이후부터 고사일 전까지	전형료의 50%를 공제한 금액
고사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3. 부득이한 사유란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필답(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입원, 본교의 과실, 기타 사고 등) 또는 타대학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하여 본교의 필답(면접)고사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4. 1단계 합격자가 타대학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하여 지원취소를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지원취소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서류제출 및 서류반환

1. 서류제출

입학원서(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업로드)와 해당 제출서류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인터넷 접수 후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이를 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처 :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신본관 1층 입학처

② 제출기간 : 2013. 7. 29(월) 9:00 ~ 8. 2(금) 17:00까지

(우편발송은 2013. 8. 2(금) 국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2. 서류도착 확인

서류의 도착여부는 제출서류 발송 이후 약 1~2일이 지난 후부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서류반환

불합격자 및 미등록자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기재한 서류반환 국내주소로 2014. 2. 28(금) 이전에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 : 서류제출 시 번호순 정리하여 제출

번호	구 분	교포 자녀	공무원 자녀	해외지사 주재원 자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본인 외국인	비 고
1	입학원서(본인 사진 업로드)	○	○	○	○	○	○	인터넷 접수화면에서 원서접수 후 출력
2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	○	○	○	○	○	
3	외국학교 조사표	○	○	○	○	○	○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입학 일 전까지 졸업증명서 제출
5	초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	○	○	○	○	○	-국내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 제출 -전입일 및 전출일 반드시 명기
6	중학교 재학/성적증명서	○	○	○	○	○	○	
7	고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	○	○	○	○	○	
8	해외 고등학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ar)	○	○	○	○	○	○	학기개시일 및 학기종료일 명기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해외 근무지 및 근무 기간 명기
10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본사 또는 은행 원본대조필 날인 -해외 근무시작일 전에 수리된 서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장이 수리한 서류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정부 발급)					○		
12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 (외국정부 발급)					○		제출대상자 : 자영업자, 회사 대표, 회사경영자, 출자자 등
13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학생,부,모)	○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		발행처 : 해외주재 영사관 또는 외교부 별관(종로구)
14	출입국사실증명(학생,부,모)	○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	학생만	발행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www.minwon.go.kr)
15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교포는 말소자등본)	○	○	○	○	○		
16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17	영주권 사본(학생,부,모)	○						영주권취득일 명기
18	외국국적증명서(학생,부,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학생만	국적취득일 명기
1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과 기본증명서						학생만	발행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www.minwon.go.kr)
20	사실증명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학생,부,모)	○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	학생만	-인터넷 접수화면에서 출력 -성명 기입 및 서명/날인
21	신분증 사본(학생,부,모)	○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보호자(1인) 및 학생만	○	학생만	

○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유효기간

제출서류의 발급일은 서류제출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 해외발급서류는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2.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번역공증을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외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최근에 발급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을 입학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정부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는 [공무원 자녀]에 준하는 서류에 「정부초청(추천)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의 경우 보호자가 회사근무와 무관하면 「보호자 재직증명서」 대신 해외거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증명서[예1) 자영업자 - 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의 해외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3년간 세금납입증명서(보호자 성명 명기), 예2) 선교사 - 파송증명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예3) 유학자 - 해외대학(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석·박사 재학/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의 경우 보호자 관련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 「해외대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석·박사 재학/성적증명서」에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8.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시·도교육청이 발급하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인정증명서」, 시·군·구청이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사유서(양식2)」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제출서류상의 지원자 성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필요에 따라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① 원본과 사본 모두를 지참하여 입학처에 방문한 후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캠퍼스 신본관 1층 입학처)
 - ② 국내 정규고교 또는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고교장의 직인으로 확인된 원본대조필 서류도 제출가능 합니다.
 - ③ 위의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입학 전까지 원본을 입학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02-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거나 외국주재 한국공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법 안내

□ 1단계 인터넷 원서접수

○ 절차 안내

※ 원서접수 기간 : 2013. 7. 2(화) 9:00 ~ 7. 5(금) 17:00

- 1 ①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go.hanyang.ac.kr>) 접속
- 『원서접수』 배너 클릭하여 원서접수 페이지로 이동
②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접속



- 2 회원가입(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3 『한양대학교 201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선택



- 4 입학원서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5 입학원서 기본사항 및 지원자 학력사항 등 입력



- 6 전형료 결제 전 최종 입력사항 확인



- 7 전형료 결제(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 8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고사당일 지참)

○ 유의사항

1.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원서의 수정 및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원서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고사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3. 수험표 분실 시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지원자통합서비스’ 또는 접수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험표출력’ 화면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2단계 서류제출

○ 절차 안내

※ 1단계 합격자 서류제출 기간 : 2013. 7. 29(월) 9:00 ~ 8. 2(금) 17:00

1 1단계 합격자 발표 확인(<http://go.hanyang.ac.kr>)



2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접속하여 접수확인 페이지로 이동



3 입학원서,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외국학교 조사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발송용 봉투표지 출력하여 제출



4 제출서류 도착 확인(<http://go.hanyang.ac.kr>)

○ 유의사항

1. 서류제출은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 원서접수 화면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한 후 「입학원서」,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외국학교 조사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발송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의 도착여부는 제출서류 발송 이후 약 1~2일이 지난 후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누락 및 오기되어 발생한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수험생은 고사당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기구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답안 마킹용 컴퓨터사인펜은 고사감독이 제공합니다.
3. 고사장에서는 소음을 유발하거나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휴대폰, 전자시계, MP3, PDA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후 고사감독에게 맡겨야 합니다. 만일,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발견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퇴실 조치합니다.
4.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학을 취소하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5.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선발 종료시점까지 연락(전화)이 가능해야 하며, 전화번호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연락처 변경 시 입학처에 통지해야 함)
6. 수시전형을 실시하는 여러 대학교에 중복 합격한 경우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 중 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7. 본 대학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됩니다.
8.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실시된 고사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9. 본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 선발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인터넷 등록포기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본교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http://go.hanyang.ac.kr>)에 접속 후 ‘지원자통합서비스’의 ‘등록포기신청 및 등록금환불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

- 가. 본인의 수험번호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표에 부여받은 번호
- 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번호
- 다. 본인의 핸드폰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번호의 핸드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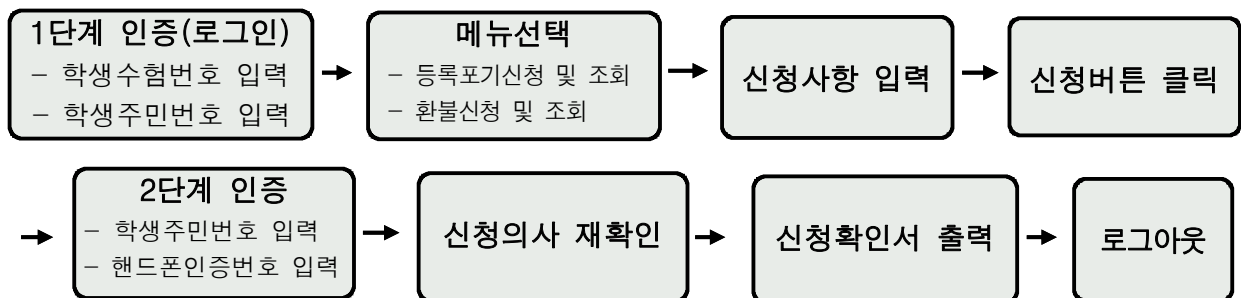
3. 접속메뉴 구분

메뉴구분	대 상
등록포기신청 및 조회	합격자로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
환불신청 및 조회	등록자로서 등록예치금 환불을 원하는 자

4. 신청기한

- 가. 등록포기신청은 2013년 12월 11일(수) 17: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나. 등록예치금환불신청은 2013년 12월 17일(화) 17: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5. 신청절차



※ 환불은 은행영업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평일 오후 4시 이후 접수 건은 다음날 오전 중에 처리되며,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접수 건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환불됩니다.

※ 환불완료 확인은 동일 메뉴에 접속하여 ‘환불처리상태’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 ☞ 환불 처리중인 경우 : ‘환불신청’
- ☞ 환불이 완료된 경우 : ‘환불완료’

2015학년도 변경사항 예고

□ 지원자격 통합신설

- 2015학년도부터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지원자격 각 항목을 폐지하고,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로 지원자격을 통합하여 신설합니다.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요건 : 학생이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중 통산 3개 학년을 수료하고, 해당 3개 학년 중 부모 모두가 고교과정 6개월(180일) 이상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상(365일 + 180일 = 545일)을 해외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해외국가 체류일수 계산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대한민국 출국일은 해외국가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일은 해외국가 체류일수에 산입합니다.
- 자격요건 충족 사례

예1)

구 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재학(6개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부(父) 해외체류(18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모(母) 해외체류(1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예2)

구 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재학(6개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부(父) 해외체류(18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모(母) 해외체류(18개월)		3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 ‘예2)’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7개 학기이나 이 기간 중 부(父)의 해외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 7-2, 8-1, 8-2, 9-1, 11-2, 12-1와 중복된 18개월이고, 모(母)

의 해외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 7-2, 8-1, 8-2, 11-1, 11-2, 12-1와 중복된 18개월에 해당됨.

※ 학생의 해외재학이 계속될 경우, 방학도 해외재학기간에 산입하므로 학생의 방학기간 중에 부모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해외체류일수에 포함.

□ 전형방법 변경

- 영어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공인어학성적(TOEFL(iBT), TEPS, HSK, JLPT)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의 국어(인문계), 수학(자연계), 영어구술면접(국제학부) 시험은 유지하며,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캠퍼스	계열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지원자격 최소기준)
서울	인문	국어필답고사 100%	TOEFL(iBT) 90, TEPS 720, HSK 5급, JLPT N1급
	자연	수학필답고사 100%	
	국제 학부	영어구술면접 100%	TOEFL(iBT) 100, TEPS 800
ERICA	인문	국어필답고사 100%	TOEFL(iBT) 80, TEPS 700, HSK 4급, JLPT N2급
	자연	수학필답고사 100%	

※ 공인어학성적은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 중 한 가지만 제출가능하면 지원자격에 해당하며, 전형 반영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제출일 기준으로 TOEFL(iBT), TEPS, HSK는 2년 이내, JLPT는 3년 이내의 성적만을 인정.

- [초·중등 전교육과정(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3년 특례 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답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공인어학성적은 해당사항 없음.)

[1]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2.2.29>

수험번호 : *****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201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02-2220-0075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입학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담당자		
증명종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통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국민]	[]병기하지 않음 [√]병기함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성명 *** 주소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용 도	대학입학전형 지원자격확인	제출처 한양대학교 입학처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읍장 • 면장 • 동장

귀하

위 임 장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는 한양대학교 입학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자료를 발급받아 대학입학전형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신청인'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 「위임장」의 '발급대상자'란에 해당자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세요.

※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세요.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 100만원 이하는 제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채권자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국 수학 사유서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	수험번호	
지원모집단위	캠퍼스	대학	학부()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작성일 : 년 월 일

중·고과정 3 (1)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재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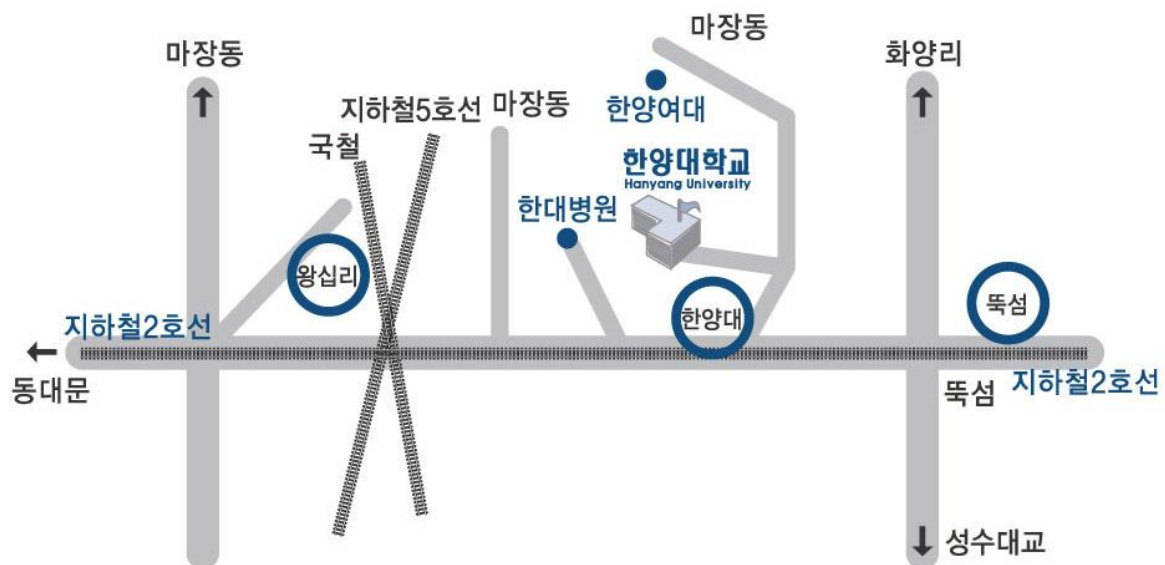
■ 증빙서류 목록() :

◆ 교통편 안내 및 약도 ◆

서울캠퍼스

버 스 121, 302, 2012, 2013, 2014, 2016, 2222 한양대 정문앞 하차

지 하 철 한양대역(2호선) 2번 출구
왕십리역(2호선, 5호선, 중앙선) 6번 출구



서울캠퍼스 | Seoul Campus Map



- | | | | |
|------------------|----------------|-------------------|-----------------|
| 1 본관 | 20 한양초등학교 | 39 제2학생생활관 | 89 경영관 |
| 2 학생복지관 | 21 제1음악관 | 40 과학기술관 | 90 신본관 |
| 3 백남학술정보관 | 22 박물관 | 41 한양여대교수연구동 | 91 개나리관 |
| 4 사회과학관 | 23 제1학생생활관 | 42 동문회관 | 92 국제관 |
| 5 제1공학관 | 24 의대계단강의동 | 43 사범대학별관 | 94 한양테크노숙사 |
| 6 인문관 | 25 부속병원동관 | 44 부속병원제1주차동 | 100 퓨전테크센터 |
| 7 의과대학본관 | 26 백남음악관 | 45 부속병원서관 | 101 재성토목관 |
| 8 제1의학관 | 27 제2공학관 | 46 산학기술관 | A 대운동장 |
| 9 제2의학관 | 28 한양여대유아교육관 | 47 제2법학관 | B 노천극장 |
| 10 제2음악관 | 29 부속병원신관 | 48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 C 테니스장 |
| 11 대학원, 토건관 | 30 한양여대식물영양관 | 49 부속병원제2주차동 | D 애지문(한양대역2번출구) |
| 12 사범대학본관 | 31 한양여대정보문화관 | 50 제3학생생활관 | E 신정문 |
| 13 공업센터본관 | 32 올림픽체육관 | 53 행원파크 | F 구정문 |
| 14 신소재공학관 | 33 공업센터별관 | 58 우체국 | G 동문(체육관근처) |
| 15 부속병원본관 | 34 생활과학관 | 74 사자가군것질할때 | H 후문(과학기술관근처) |
| 16 학군단 | 35 한양여대행정문헌정보관 | 75 한양사이버대학교 | I 의료원정문 |
| 17 경제금융관/법학학술정보관 | 36 자연과학관 | 77 정보통신관(IT BT관) | J 한양여대정문 |
| 18 학생회관 | 37 제1법학관 | 83 건축관 | |
| 19 한양여대본관 | 38 한양여대조형관 | 88 제3법학관 | |



한양대학교 입학처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홈페이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입학처 ☎02)2220-0074~9
경기 안산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입학팀 ☎1577-2876
<http://admission.hanyang.ac.kr>